

의안 번호	2254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5. 2.(목) 홍영진 의원 외 9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5. 2.(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5. 16(목)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하고 조문을 현행화하여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업역량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기존)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나. 연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운영시기, 연수기관과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라.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연수 방법과 임금 및 실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8조)

바. 증명서 등 발급 및 수여,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0조)

4. 근거법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 2, 「고등교육법」 제2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하고 조문을 현행화하여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법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